



## 월간 노동 뉴스레터

2023.07.31

### 주요 업무 사례

- ▶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
- ▶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,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에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받은 사례
- ▶ 백화점 위탁판매점주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
- ▶ A공제조합의 근로자였던 원고가 조합원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정직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,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받은 사례
- ▶ 대법원에서 은행에서 실시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야 함을 확인받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
- ▶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 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
- ▶ 외국계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부서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동일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안에서 본사의 윤리오피스와 협업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응한 사례
- ▶ 직원이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금지조치를 기각시킨 사례
- ▶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(임금체불)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
- ▶ 총무, 청소, 경비, 소프트웨어 QA,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

### 이번 달의 노동 이슈

## 이번 달의 노동법

### 최신 시행 법령
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[시행 2023. 7. 1.] [법률 제 제18928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- ▶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3. 7. 1.] [법률 제19209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
### 주목할 만한 판례

- ▶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(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3. 선고 2020가합587442 판결)
- ▶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6.29. 선고 2022다202894 판결)
- ▶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6.29. 선고 2019두55262 판결)
- ▶ 정년 도달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,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8두62492 판결)
- ▶ 조명탑 점거 농성자에게 음식물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7도9835 판결)

## 관련구성원

### 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### 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### 이세리

변호사

### 김종수

변호사

02-316-4034  
srlee@shinkim.com

## 윤혜영

변호사

02-316-4491  
hyyun@shinkim.com

## 김종현

변호사

02-316-1721  
johkim@shinkim.com

02-316-1678  
jsokim@shinkim.com

## 송우용

변호사

02-316-1696  
wysong@shinkim.com